

제 2391호
2015. 08. 26.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장 운 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5-6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
제2015-70호: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광희문 주변)	3
제2015-71호: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필동 서애길 주변)	6
● 공 고	
제2015-590호: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	10
제2015-591호: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3
제2015-591호: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
 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69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8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5길 23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5길 36-4	2015. 08. 26.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8.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70호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 광희문 주변 및 중앙아시아 거리 간판개선사업
2. 위치 및 규모
 - 광희문 주변 및 중앙아시아거리(광희문~광희동사거리, 롯데피트인쇼핑몰~광희동주민센터앞)구간내 104개 점포
 - ※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
3. 사업내용 : 불법간판을 대상지역 특색에 맞는 우수한 간판으로 개선
4. 사업기간 : 2015년 7월 ~ 2016년 2월까지
5. 사업방법 : 간판개선·관리 주민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주민자율추진
6. 소요예산 : 260,000천원(시·구비 50%)
 - 1개 점포당 설치비의 2,500천원 이내 지원하고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불법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
 - 간판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추후 개선대상 점포의 개·폐업 및 휴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추진내용
 - 광희문 주변 및 중앙아시아거리 특성에 맞는 간판디자인을 구현하여 간판개선사업 추진
 -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과 타이머스위치 설치 등으로 전기소모 최소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범위내에서 간판수량, 규격 및 디자인 등을 제작·설치
 - 간판개선·관리 주민위원회와 협약을 통한 주민자율주도로 간판개선 추진
 - 간판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내 건물주, 점포주, 전문가 등으로「간판개선·관리 주민위원회」구성·운영
 - 대상지역 주민 자발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중구청은 행정적 지원

- 개선완료후 지속적 사후관리(불법간판 신고 등)

8.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내용

구 분	간 판 설 치 기 준
총 수량	○ 간판수량 : 1업소 2간판 ※ 도로의 곡각지점인 경우 가로간판 1개를 추가하여 설치 가능
가로형 간 판	○ 표시형태 : 판류형 또는 입체형 ○ 설치위치 : 3층 이하 정면 ○ 표시규격 ▶ 가로 :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최대 10m 이내) ▶ 세로 : 판류형 80cm 이내, 입체형 45cm 이내
돌 출 간 판	○ 설치위치 : 건물의 측단에 설치하되 일정규격으로 통일 (건물폭이 20m 이상일 경우 양측단 가능) ○ 표시규격 ▶ 간판 아랫부분과 지면의 간격은 3m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 돌출폭은 벽면에서 1m 이내, 세로크기는 3.5m 이내
창문이용 광고물	○ 2층 이하의 창문 혹은 출입문에 자사광고 한정, 폭 20cm이하 ○ 판형 혹은 입체형 제작시 1층 자사광고에 한정, 면적 0.18m 이하 ○ 유리벽면 건물의 경우 창문 안쪽으로 20cm 이격하여 설치 ○ 건물의 벽면이 유리 벽면 등 일때 광고는 2층 이하의 자사광고 한정, 세로 폭 45cm, 길이 3m, 창문면적 1/4 이내
기 타 준수사항	○ 업소당 간판수량을 초과하는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철거 ○ 대상건물의 간판은 LED조명(KS 인증제품)으로 하고 절전용 on-off 타이머 스위치 부착 및 고효율 인증문자간판용 LED 모듈 사용 ○ 검정 또는 빨강(주황, 핑크 포함), 노랑 등 원색 바탕 간판 지양 ○ 노후 건물 외벽 대한 마감 처리 방안 강구(외벽 보수, 청소등)

※ 상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서울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준용하여 경관상의 고려와 형평성을 기준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9. 허가 및 신고

-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 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이하의 광고물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10. 광고물 등의 심의

- 광고물 등의 규격, 위치, 색깔, 디자인 등에 관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표시 할 수 있다.

11. 위치도면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71호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 필동 서애 대학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2. 위치 및 규모
 - 필동 서애 대학문화거리(서울침례교회~필동삼거리, 동국대후문~SK주유소)구간내 150개 점포
 - ※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
3. 사업내용 : 불법간판을 대상지역 특색에 맞는 우수한 간판으로 개선
4. 사업기간 : 2015년 7월 ~ 2016년 2월까지
5. 사업방법 : 간판개선·관리 주민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주민자율추진
6. 소요예산 : 375,000천원(옥외광고정비기금)
 - 1개 점포당 설치비의 2,500천원 이내 지원하고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불법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
 - 간판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추후 개선대상 점포의 개·폐업 및 휴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추진내용
 - 서애길 특성에 맞는 간판디자인을 구현하여 간판개선사업 추진
 -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과 타이머스위치 설치 등으로 전기소모 최소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범위내에서 간판수량, 규격 및 디자인 등을 제작·설치

- 간판개선·관리 주민위원회와 협약을 통한 주민자율주도로 간판개선 추진
 - 간판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내 건물주, 점포주, 전문가 등으로「간판개선·관리 주민위원회」구성·운영
 - 대상지역 주민 자발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중구청은 행정적 지원
 - 개선완료후 지속적 사후관리(불법간판 신고 등)
8.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내용

구 분	간 판 설 치 기 준
총 수량	○ 간판수량 : 1업소 1간판 ※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 가능 1. 도로의 곡각지점인 경우 가로간판 1개를 추가하여 설치 가능 2.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소형돌출간판 (중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함) 3.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 간판
가로형 간 판	○ 표시형태 : 판류형 또는 입체형 ○ 설치위치 : 3층 이하 정면 ○ 표시규격 ▶ 가로 :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최대 10m 이내) ▶ 세로 : 판류형 80cm 이내, 입체형 45cm 이내
돌 출 간 판	○ 설치위치 : 건물의 측단에 설치하되 일정규격으로 통일 (건물폭이 20m 이상일 경우 양측단 가능) ○ 표시규격 ▶ 간판 아랫부분과 지면의 간격은 3m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 돌출폭은 벽면에서 1m 이내, 세로크기는 3.5m 이내
창문 이용 광고물	○ 2층 이하의 창문 혹은 출입문에 자사광고 한정, 폭 20cm이하 ○ 판형 혹은 입체형 제작시 1층 자사광고에 한정, 면적 0.18m 이하 ○ 유리벽면 건물의 경우 창문 안쪽으로 20cm 이격하여 설치 ○ 건물의 벽면이 유리 벽면 등 일때 광고는 2층 이하의 자사광고 한정, 세로 폭 45cm, 길이 3m, 창문면적 1/4 이내
기타 준수 사항	○ 업소당 간판수량을 초과하는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철거 ○ 대상건물의 간판은 LED조명(KS 인증제품)으로 하고 절전용 on-off 타이머 스위치 부착 및 고효율 인증문자간판용 LED 모듈 사용 ○ 검정 또는 빨강(주황, 핑크 포함), 노랑 등 원색 바탕 간판 지양 ○ 노후 건물 외벽 대한 마감 처리 방안 강구(외벽 보수, 청소등)

※ 상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서울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준용하여 경관상의 고려와 형평성을 기준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9. 허가 및 신고

-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 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이하의 광고물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10. 광고물 등의 심의

- 광고물 등의 규격, 위치, 색깔, 디자인 등에 관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표시 할 수 있다.

11. 위치도면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590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

1. 개정이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100선」 검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 수탁자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어린이집의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 제22조 제2항은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수탁을 영구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안 제2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문의전화 : 3396-5412, FAX: 3396-8741, 메일 : soohee@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생 략) ② <u>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u> ③~④ (생 략)	제2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591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 상위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성 주류화 제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정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

-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4조 ~ 제5조)

☐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 및 기본 시책

- 양성평등 시행 계획(안 제7조)
-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해촉 등(안 제8조 ~ 제12조)
- 회의 및 수당 등(안 제13조 ~ 제15조)

☐ 양성평등참여 및 복지증진

- 양성평등 참여(안 제17조 ~ 제22조)
-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안 제23조 ~ 제26조)
-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안 제27조 ~ 제31조)

☐ 양성평등정책 효과 증진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및 위원회 설치 등(안 제32조 ~ 제34조)
-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안 제35조)
- 성인지 통계 및 교육(안 제36조 ~ 제37조)

☐ 양성평등기금

- 기금의 설치 및 용도, 관리·운용 등(안 제38조 ~ 제41조)
- 기금운용계획 및 심의위원회(안 제42조 ~ 제46조)
- 결산 등 기타 사항(안 제47조 ~ 제4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 3396-5404, FAX : 3396-8739, 메일 : rickey3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 및 기본 시책

제1절 양성평등 시행 계획 및 추진체계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
2. 양성평등, 가족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 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17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

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일가정 양립 지원) ①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 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 가족장애인 가족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제23조(성차별 금지)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의 자립 및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 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 보장 및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27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구현 및 여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내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이나 제3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관내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3. 관내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자원봉사활동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히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

제32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분석평가의 시기·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성별분석평가위원회(이하 “분석평가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석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구성 및 운영) ① 분석평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분석평가 업무 담당 과장,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 가. 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분석평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10조부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37조(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38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42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구의 일반 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9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제2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4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구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제40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 예산서와 함께 구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양성평등관련 단체장 또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계획 변경, 기금결산심의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심의회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46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7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안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여성정책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여성발전기본법」제33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제14조”를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로 하며, 제1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제18조”를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본문 중 “「여성발전기본법」제23조”를 “「양성평등기본법」제26조”로 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594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과제100선」 책자의 규제개혁 개선사례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도·소매인간 분쟁을 조정 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 분쟁 조정 규정 신설(안 제15조 제2항)
 -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 분쟁 조정
 -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 분쟁 조정
 -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조항
 -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신설(안 제16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한차례 연임가능)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중구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 소비자단체의 대표
 -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중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안 제19조, 안 제24조)

○ 조정안에 대한 불복(안 제25조)

-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한 불복시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해 재조정 신청 가능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시장경제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문의전화: 3396-5062, FAX: 3396-8679, 메일: mo8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조문 중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를 “「유통산업
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에서”로 한다.

제5장(제15조부터 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나. 중구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중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중구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유통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① 해당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 ② 위원회 조정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조정에 대한 불복)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신설 >	제1조(목적)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 제36조에서----- ----- ----- -----.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구 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중구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중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중구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현행	개정안
	<u>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제1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 <u>1.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u> <u>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u> <u>3. 위원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u> <u>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u> <u>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u>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제21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u> <u>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u> <u>1. 회의의 일시 및 장소</u> <u>2. 출석위원의 직·성명</u> <u>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u> <u>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u> <u>제22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u> <u>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유통업무팀장이 된다.</u> <u>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u>

현행	개정안
	<u>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u>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u> <u>① 해당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u> <u>② 위원회 조정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u> <u>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 <u>제25조(조정에 대한 불복)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u> <u>제2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